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경 찰 공 무 원 승 진 임 용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없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교류 경력에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 중에 나타난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토록 규정(안 제5조)

나.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유공)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은 1년의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이하 “당해 비위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1) 및 2)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당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경찰기관의 장이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경찰기관의 장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당해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와 불송
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
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
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제2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의 인
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1.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찰공무원 또는 「적
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유공)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 1년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① (생 략)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 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 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 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②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기간	2.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u><신 설></u>	<u>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u> <u>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u> <u>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위해</u> <u>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u> <u>행위(이하 “당해 비위행</u> <u>위”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u> <u>1) 및 2)요건에 모두 해당</u> <u>하는 경우</u> <u>1) 당해 비위행위에 대한</u> <u>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u> <u>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

는 경우

가) 경찰기관의 장이
「경찰공무원 징계
령」 제9조에 따른 징
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경찰기관의 장의 징
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
계하지 아니하기로 의
결한 경우

다) 징계처분이 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이나 법
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
정된 경우

2) 당해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
우. 다만, 기소유예의

③ ~ ⑧ (생 략)
제26조(근속승진) ① (생 략)

<신 설>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
우와 불송치 또는 불
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
에 따라 유죄가 확정
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
거나 약식명령이 청구
된 사람이 법원의 판
결에 따라 무죄로 확
정된 경우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근속승진) ① (현행과 같
음)

② 법 제16조의 단서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
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
는 경찰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
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1.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
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인사교

③ ~ ⑤ (생 략)	<u>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u> <u>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찰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유공)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 1년</u> ③ ~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연 락 처	(02) 3150 - 1207